



제428회국회(임시회)
제2차 정무위원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무료 이용 국공립 시설 확대〉

■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748호)

2025. 8.

정 무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최 기 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참전명예수당 인상	3
2.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범위 확대	8

I. 제안경위

1. 제안자 : 이상회의원 등 10인
2. 제안일 : 2025. 6. 12.
3. 회부일 : 2025. 6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,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,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

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참전명예수당 인상

-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1호¹⁾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).

현행	개정안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~ ⑥ (생략)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하며, 그 <u>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<u>지급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“기준 중위소득”이라 한다)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한다.</u> ⑧ <u>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설></u>	

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0. (생략)

11. “기준 중위소득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.

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(생략)	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“기준 중위소득”이라 한다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	② ----- -----기준 중위 소득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□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지급액을 월 45만원²⁾으로 정하고 있음.

○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월 45만원에 불과하여,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³⁾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

2)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(2024년)에서 월 45만원(2025년)으로 인상됨.

3)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,392천원이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이 최소 1,942천원 인상됨.

취지로 보이나,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- 첫째,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(239만 2,000원) 기준으로 향후 5년간 8조 9,942억원(연평균 1조 7,988억원)⁴⁾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재정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<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재정소요>

구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① 참전유공자(명)	93,420	84,492	76,417	69,114	62,509
② 인상단가(천원)	2,392	2,392	2,392	2,392	2,392
③ 소요예산 (①×②×12, 백만원)	2,681,528	2,425,258	2,193,474	1,983,848	1,794,258
④ 기존단가(천원)	450	450	450	450	450
⑤ 기존단가소요예산 (①×④×12, 백만원)	504,468	456,257	412,652	373,216	337,549
⑥ 추가소요예산 (③-⑤, 백만원)	2,177,060	1,969,001	1,780,822	1,610,632	1,456,709

* 인원 : 중기재정소요 인원 반영

** 기존단가 : 25년 참전명예수당 단가(45만원) 적용

자료: 국가보훈부

- 둘째, 개정안에 따를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239만 2,000원이 되는데, 이는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(상이7급 기준 월 65만 1,000원)이나 공훈을 인정받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

4) 국가보훈부가 추계한 추가재정소요 기준

예수당(월 51만원~53만원)보다 많아지므로, 다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,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보훈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.

<상이유공자 등 보상금과 참전유공자 수당 비교>

(단위: 천원)

참전명예수당		상이7급 보상금		고엽제후유의증수당	무공영예수당
현행	개정안	국가유공자	보훈보상대상자		
450	2,392	651	456	596~1,234	510~530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셋째, 법률에서 직접 수당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, 보훈급여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는 경제상황 등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⁾.
- 참고로,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.

5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 관련 법률 및 「기초연금법」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

<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개정안>

구분	대표발의자 (의안번호)	개정안	
		인상내용	금액(천원)*
1	김승수의원 (2200059)	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 금액에서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 차액	최소 0 ~ 최대 2,360
2	구자근의원 (2200169)	1인 가구 최저생계비	1,435
3	박덕흠의원 (2202217)	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	718
4	이헌승의원 (2204070)	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	837
5	이언주의원 (2204276)	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60 이상	861
6	정희용의원 (2206065)	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	1,435
7	김소회의원 (2207832)	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	1,435

* 2025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

□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만 급격히 인상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 상향 요구로 이어져 보훈급여금 전반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고, 막대한 국가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2.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범위 확대

-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현행	개정안
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<u>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u>	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u>

-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, 공원, 박물관·미술관, 수목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,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은 50% 할인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음.

<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>

시설의 종류	감면율(일반요금 대비)
1. 고궁 및 능원	100분의 100
2. 국공립 공원	100분의 100
3. 독립기념관	100분의 100
4. 전쟁기념관	100분의 100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	100분의 100
6. 국공립 수목원	100분의 100
7.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분의 100

시설의 종류	감면율(일반요금 대비)
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)	100분의 50
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100분의 50

※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관련[별표 1]

□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‘국공립 공연장’과 ‘국공립 공공체육시설’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문화·체육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,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○ 국가보훈부가 2024년 실시한 ‘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’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해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51.1%로, 2021년 48.1%, 2018년 47.8%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지출은 보훈대상자 월평균 9.9만원에 비해 참전유공자는 4.9만원으로 낮은 편⁶⁾이므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문화 및 여가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.

○ 또한, 이용료 면제는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운영비 부담 증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므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시행이 가능함.

□ 다만,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도 다른 해당 법률에서 국·공립시설 이용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,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을 함께 논의할

6) 국가보훈처·통계청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「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」, p.203~210

필요가 있음.

<국가보훈대상자 고공 등의 이용지원 대상>

지원대상	관계법령
·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	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
·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상이등급 1~3급 판정자의 활동보조인 1명	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, 동법 시행령 제86조
·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상이등급 1~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인 1명	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, 동법 시행령 제67조의5
· 참전유공자	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
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환자	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
· 5·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장해등급 1~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인 1명	·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, 동법 시행령 제52조
·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상이등급 1~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인 1명	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, 동법 시행령 제58조

자료: 국가보훈부

☐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측면에서 동의하나,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타 대상에 관한 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107